

# 임대차계약 [ ] 신고서(신고증명서) [ ] 변경신고서(변경신고증명서)

※어두운 난(□□)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10일	
임대 사업자	[ ] 개인사업자	성명	주민등록번호
	[ ] 법인사업자	법인명(상호)	법인등록번호
	주소(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)		전화번호 (유선) (휴대전화)
			전자우편

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		구분	대출금 (원)	임대차 계약기간		임대조건(원)		묵시적 계약 갱 신 여부
				개시일	종료일	임대보증금	월임대료	
건물 주소	호, 실 번호 또는 층							
		[ ] 최초 [ ] 변경 전						
		변경 후						
		[ ] 최초 [ ] 변경 전						
		변경 후						
		[ ] 최초 [ ] 변경 전						
		변경 후						
		[ ] 최초 [ ] 변경 전						
		변경 후						
		[ ] 최초 [ ] 변경 전						
		변경 후						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[ ]최초 신고 [ ]변경 신고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 
특별자치도지사  
시장·군수·구청장     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청인 제출서류	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,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신고 시 이미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2. 준주택의 경우 :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, 이 경우 임차인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	

**작성방법**

1. 대출금은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으로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.
2. 임대조건란에 실제 임대조건을 적습니다.
3.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.
4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임대사업자,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- 가. 전화사용료 납부 확인서
  - 나.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
  - 다. 자녀의 재학증명서
  - 라. 그 밖의 공공요금 영수증 등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5.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(임차인용)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.

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  
특별자치도지사  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**처리절차**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